주류안전관리
온라인 민원설명회

2020.6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안전정책과

2020년도 주류안전 주요 정책방향

2020.6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안전정책과

Contents

Ⅰ 2019년 주요 성과

Ⅱ 2020년 주류안전관리 정책방향

Ⅰ 2019년 주요성과

2019년도 주요성과

➢ 효율적 주류안전관리로 위생 관리 및 제조 환경 수준 향상 도모(1)

✓ 위생관리등급제를 통한 영세업체 위생수준 지속 성장

⇒ 위생관리 준수율(%) : ‘14년 85.5% → ‘16년 88.6% → ‘19년 93.4%

⇒ 지도단속 재위반율(%) 감소 : (목표) 9.5%* → (결과) 6.2%

2019년도 주요성과

➢ 효율적 주류안전관리로 위생 관리 및 제조 환경 수준 향상 도모(2)

✓ <u>찾아가는 위생컨설팅 '주류안전관리 지원센터 ' 를 통해 영세업체 위생관리 집중 지원</u>

⇒ 만족도 조사 : 만족 이상 응답 비율은 89.1%로 긍정적 평가

⇒ 식품안전인식도 개선(10점 척도) : 6.9(전) → 9.0(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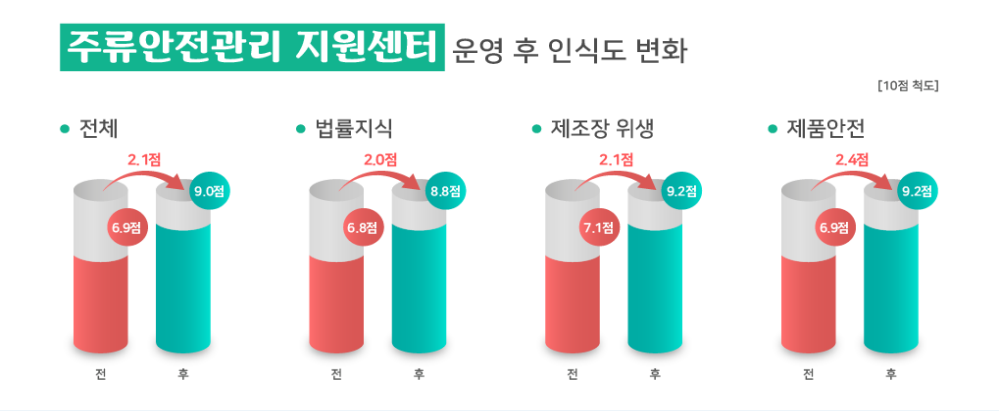

막걸리협 "식약처 주류업체 현장지도 만족도 높아"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11.27 18:26 | 댓글 0

주류안전관리지원센터 지원사업 효과 조사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주류안전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주류 제조업체의 현장 지도와 컨설팅에 대한 주류업계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한국막걸리협회는 27일 주류안전관리지원센터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계의 소통이 강화되고 국내 주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는 막걸리를 비롯한 타 주류 협회들이 정부 차원의 주류 관련 지원 사업 중 업체에 실질적인 효과를 주는 사업으로 식약처의 주류안전관리지원센터 사업을 꼽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9년도 주요성과

➢ 합리적 제도 개선으로 산업경쟁력 향상(1)

✓ 주세법-식품위생법을 함께 적용 받는 주류 특성을 반영, 합리적 제도 개선 추진

⇒ 브랜디, 일반증류주에 아황산염류(6품목*) 사용가능('19.1)

*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 곡물 이외 원료를 사용하는 일반증류주의 메탄올 규격 완화(500→1,000ppm, '19.3)

⇒ 주류에 사용 가능한 원료 품목에 오크칩(바) 추가('19.7),

⇒ 탁주 등의 총산 규격 삭제 및 주류 분류체계 정비 ('19.7)

2019년도 주요성과

➢ 합리적 제도 개선으로 산업경쟁력 향상(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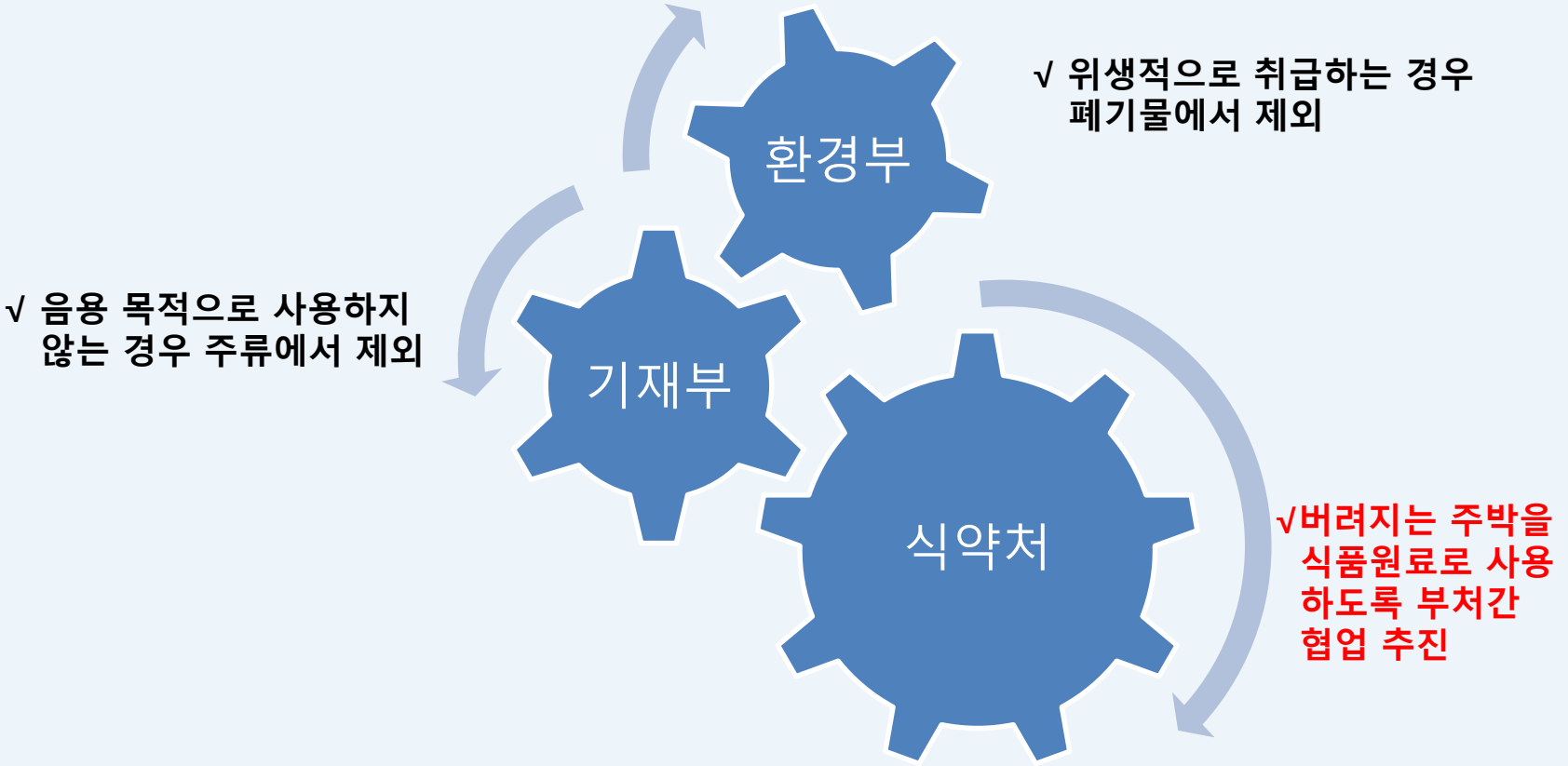

2019년도 주요성과

➢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주류 안전성 확보

✓ **시기별 주류소비패턴을 반영한 주류 제조·유통 점검 및 수거·검사**

⇒ 시중 유통·판매 및 온라인 판매 제품 등 **1,034건 수거·검사**

⇒ 시기별 주요 소비제품 및 위해우려제품 중심으로 **887개소 기획 점검**

✓ **부적합 식품용수 긴급통보시스템 마련**

✓ **맥주 글리포세이트 괴담 등 SNS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

⇒ 수입맥주 41종, 국내 맥주 10종 수거·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강화로 이슈 확산 차단

[기자24시] '맥주 괴담' 잡은 식약처

이맥주 기자 입력 : 2019.05.02 00:05:01 수정 : 2019.05.02 16:39

지난달 22일 '유전자변형 종자업체 몬산토가 개발한 제초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된 맥주'라는 내용으로 수입 맥주들에서 제초제가 검출됐다는 내용이 메신저를 통해 유포됐다. 기자에게만 여러 명이 이 내용을 보낸 것을 감안하면 많은 국민이 이를 받아보았을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7일 여기에 언급된 수입 맥주뿐 아니라 국산 맥주와 와인까지 포함해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해 총 41개 제품 모두에서 글리포세이트가 '불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맥주괴담'이 유포된 지 불과 5일 만에 이를 바로잡은 것이다.

2019년도 주요성과

➢ 소통과 협력 강화로 주류안전관리 신뢰 확보

✓ **계절별 생활밀착형 정보제공, 거리캠페인 등 온·오프라인 연계 홍보강화**

⇒ 홍보동영상, 카드뉴스 제작, 온라인 채널 통해 전파

<담금주 만들 때 주의사항>

<건전한 음주습관 119>

<유해물질 바로알기>

<수제맥주 안전관리>

⇒ 식품안전의날 홍보부스 운영 및 이물 저감화를 위한 캠페인 실시

II 2020년도 주류안전관리 정책방향

2020년도 주류안전관리 정책방향

주류 안전관리 강화

- 위생관리등급제 전면 개편
- 주류 제조유통업체 점검 강화
- 주류 수거·검사
- 식품 용수 오염 예측 시스템 시범 운영

자율 안전관리 유도

-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 운영
- 주류 이취 자율관리제도 운영 방법 개선
- 소규모 주류 안전관리 지원

제도 개선 및 소통 강화

- 주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제도 개선 추진
- 소비자 공감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 정책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주류안전관리 강화 주요 업무

✓ **주류제조업체의 위생관리등급제 운영방법 개편**

⇒ 위생 취약업체(신규, 행정처분, 중점관리 등) 중심 수준평가하는 체계로 개편

✓ **주류 안전 사각지대 발굴하여 지도·점검 강화**

✓ **주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국내·외 유통 주류 수거·검사**

⇒ 주류 이슈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내외 주류 업무 일원화
* 수입 주류 유통 사후관리 업무 이관('19.10~)

✓ **지하수 등 식품용수 오염 예측 시스템 구축**

(1)위생관리 등급제 운영체계 개편

주류 위생관리등급제 운영 성과

✓ **'14년부터 전체 주류업체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제* 시행** 이후 **위생 수준 크게 향상**

* 전체 주류업체 위생 수준에 따라 3등급(자율·일반·중점)으로 구분관리하는 제도

위생수준 준수율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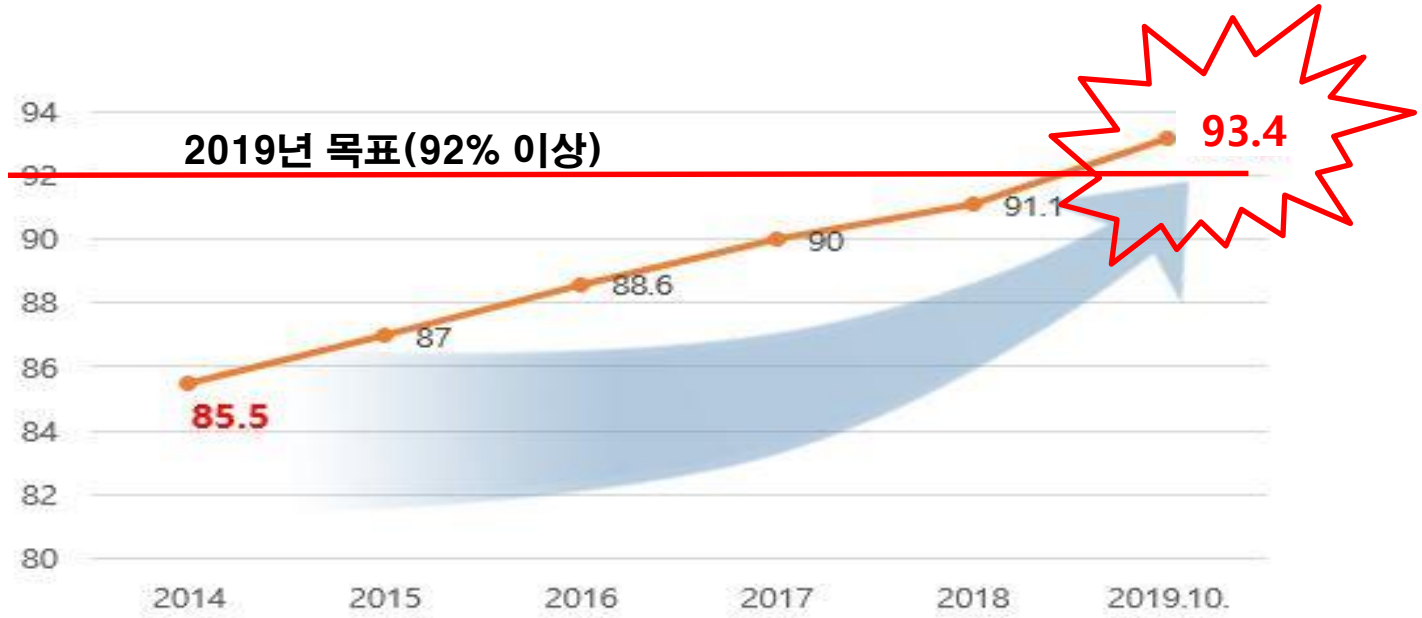

☞ 이외에도 HACCP 인증업체 확대, 행정처분 건수 감소, 중점관리업체수 감소

(1)위생관리 등급제 운영체계 개편

~'19년까지	'20년부터~
◇ 전체 주류 대상 위생관리등급제 시행 (자율, 일반, 중점 3단계 분류)	→ ◇ 자율 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취약 주류 중심의 선택적 위생관리 실시(자율/위생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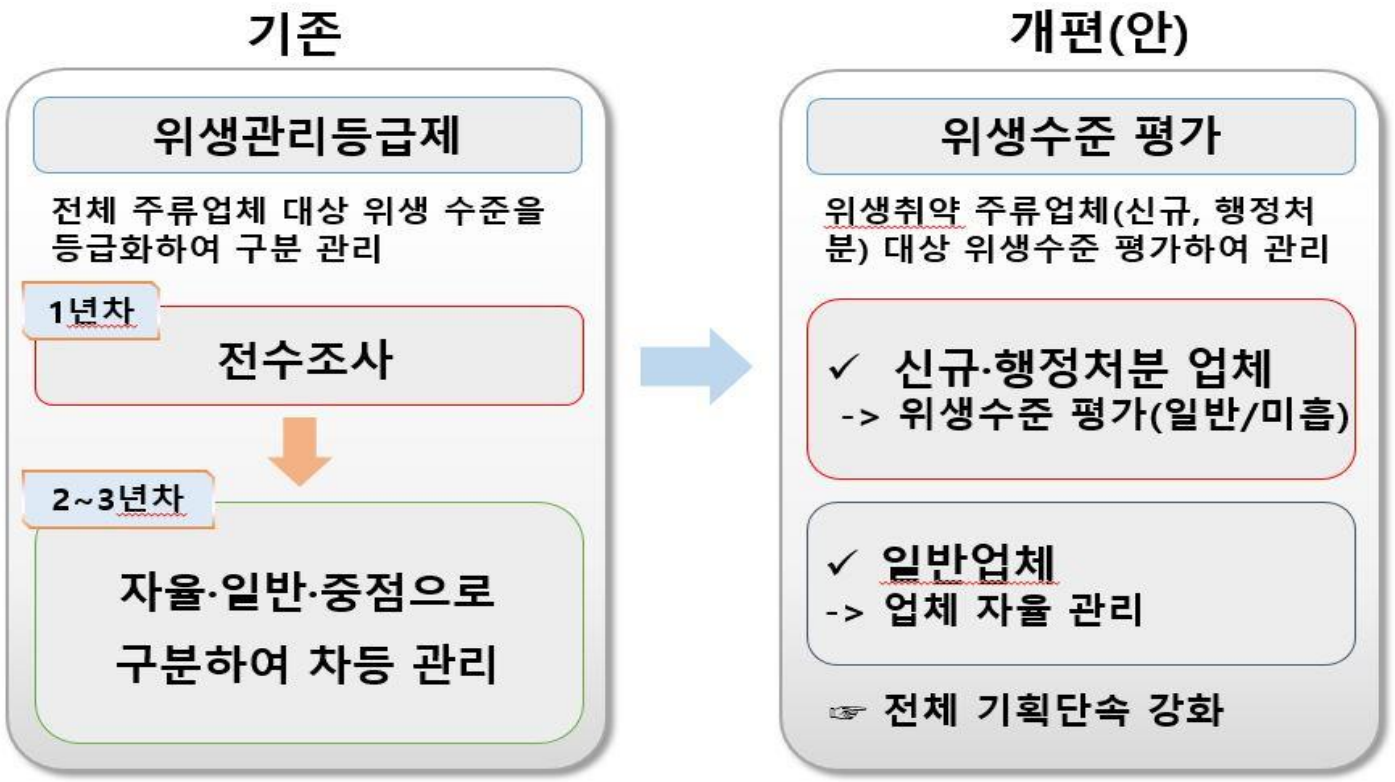

(1)위생관리 등급제 운영체계 개편

새로운 주류 위생관리등급제 운영 체계

✓ **위생관리가 취약한 업체(행정처분, 기존 중점관리, 신규 영업등록)는 집중 관리하고 자율업체는 자체 관리 확대**

AS-IS	TO-BE
○ 주류업체 전체 관리(3년 주기) (탁·약주 등 약 1,200개소) ○ 월별 지도점검	○ 취약업체 집중관리 (신규, 부적합 등 약 250개소) ○ 그 외 업체는 자율관리 확대

☞ **'취약 주류 제조업체 위생관리 수준평가 시스템' 도입**

✓ **(위생 취약업체) 기본 위생관리 수준 달성을 목표로 영업등록부터 제조까지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 및 점검 등으로 집중 관리**

✓ **(자율업체) 자체점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

(1)위생관리 등급제 운영체계 개편

위생관리등급제 개편안

- 취약 주류업체 위생관리 수준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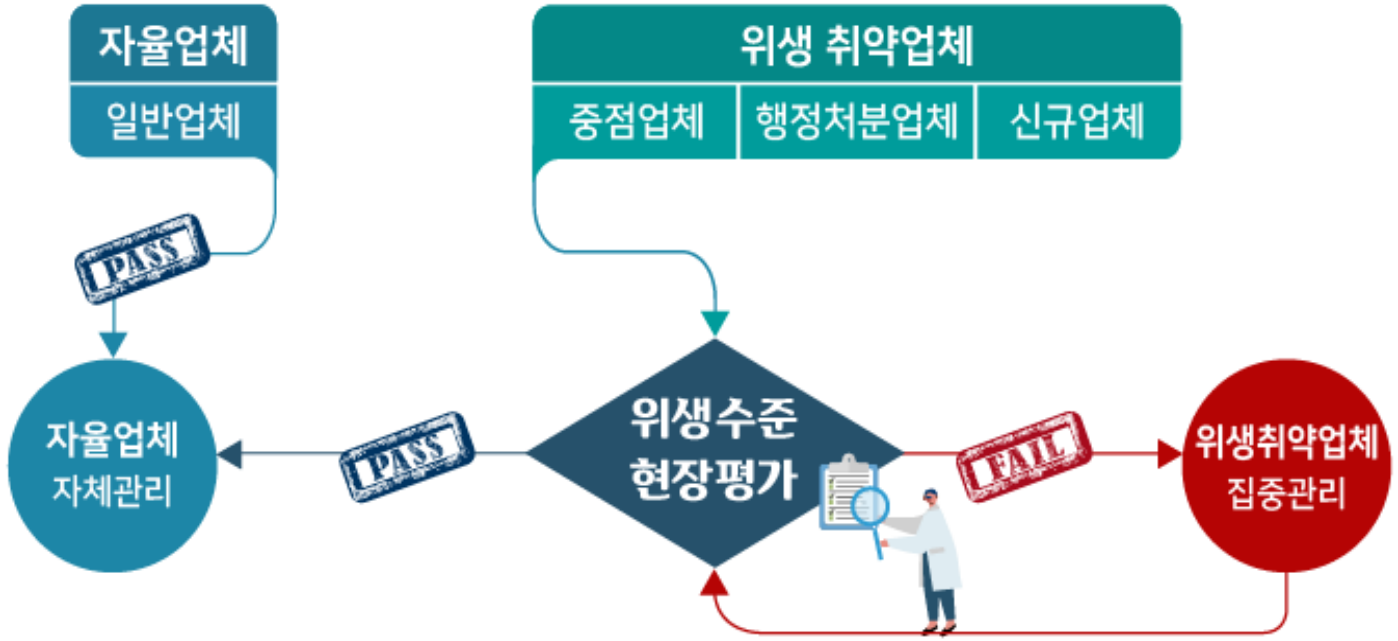

(1)위생관리 등급제 운영체계 개편

✓ (위생 취약업체) 위생관리등급제 평가기준에 따라 기본 관리 항목(62개) 중심으로 수준 평가(1회/반기)

구분	평가내용	평가항목	점수
1	서류관리	9개	20점
2	환경 및 시설관리	29개	40점
3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관리	5개	10점
4	원료, 제조공정 및 제품관리	19개	40점
총계		**62개**	**110점**

✓ (자율업체) 서류 및 제품관리(30개 항목) 위주로 업체 스스로 평가 제출(1회/년), 미흡하거나 미제출하는 경우 공무원 점검

구분	평가내용	평가항목	점수
1	서류관리(건강검진 포함 2항목)	11개	24점
2	원료, 제조공정 및 제품관리	19개	40점
총계		**30개**	**64점**

(2) 제조유통업체 감시망 확대

주류제조업체 지도점검

✓ **2020년 주류 위생관리 등급제 자율점검 중심으로의 전환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 발굴하여 주류업체 전반의 점검 체계 강화**

- 특정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는 주류 등 관리 사각지대를 발굴 및 집중 점검

✓ **위생 취약 업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계절별, 테마별로 맞춤형 기획단속 실시**

✓ **온라인 마켓을 통해 유통·판매되는 불법 담금주**(말벌주, 노봉방주, 봉삼주 등) **단속**

(2) 제조유통업체 감시망 확대

국내·외 유통 주류 제품 수거·검사

✓ **주류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발 빠른 대응으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위해요소 항목 중심으로 유통되는 국내 및 수입 주류 수거·검사 확대

✓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3개월→6개월) 로('20.4) 유통 주류에 대한 위해 항목 중심 검사 강화**

⇒ **온라인 판매 전통주, 뉴트로(Newtro) 등의 소비 증가 주류 수거·검사 확대**

✓ **수입 유통 주류의 안전관리 강화**

⇒ **정밀검사 면제 등 서류검사 대상 수입 주류 중심으로 수거·검사 확대**

(3) 식품용수(지하수) 안전관리강화

과학적.사전예방적 관리 체계 구축

✓ **'부적합 식품용수 긴급통보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

- 행정조치 지연 방지를 위해 구축한 긴급통보시스템의 현장 적용성 및 실효성 검증 등

☞ 먹는물 검사기관에서 지자체로 유선, 팩스 등을 통해 전달되는 부적합 검사결과를 긴급통보시스템에 실시간 입력, 지방청·지자체 자동통보

주류업체 자율 안전관리 유도

✓ **소규모주류제조업체 안전관리 지원 확대**

⇒ 권역별 주류안전관리 지원, 식품유형별 기술세미나, 보수교육 등

✓ **주류제조업체 이취(이미) 자율관리체계 운영 개선**

⇒ PC 등을 이용하여 자율보고 할 수 있도록 보고 방식 개편

⇒ 이취 뿐 아니라 이미의 소비자 클레임 현황을 함께 보고하도록 개선

(1)주류안전관리 지원센터 운영

권역별 주류안전관리 지원센터 운영

✓ **중·소규모 주류업체 대상 현장 중심의 맞춤형 솔루션 제공**

- 4개 권역 별(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운영
- 맞춤형 현장컨설팅, 기술상담, 위생 안전교육, 분석 실습, 우수업체 현장방문 등 지원

* ('15) 157 → ('16) 140 → ('17) 142 → ('18) 242 → ('19) 182 → **('20) 180개소**

업체선정

- **'19년 이후 신규업체** 우선 지원
- **위생취약업체**(행정처분 등)
- HACCP 인증 준비 업체 지원

중점관리

- **원료수불부, 생산기록작성 등 취약 분야**
- 품질관리 등 애로사항 해결 **상시 전문가 콜백(call-back) 서비스**
- 다빈도 위반사항 **자율 관리 지도·유도**
- **소규모 HACCP 인증 가능 업체 발굴**

(2)주류 이취(이미) 자율관리 체계 운영

이취 자율관리체계 운영

✓ **다소비 품목인 맥주, 소주의 이취 등 안전·품질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국민 불안감 증대 및 사회적 이슈화로 사전 안전관리**

- 맥주 제조업체(7개소) 자율 이취 관리 실시('17.6월~)
- 수제 맥주(41개소, '18.5월~) 및 소주 업체(17개소, '19.5월~)로 단계적 확대 시행

✓ **업체 자율 보고 이취(이미) 현황('19.12월 기준)**

⇒ **참여업체 : 65개소(맥주 7, 수제맥주 41, 소주 17)**

- 이취 주요 사례 : 석유 냄새, 화장품 냄새, 맥아 및 효모 특유의 냄새 등
- 이미 주요 사례 : 김빠진 맛, 물맛, 쓴맛, 오래된 맛, 신맛, 상한 맛 등

(2)주류 이취(이미) 자율관리 체계 운영

‘20년 주요 개선방향

✓ 소비자 클레임 현황 보고 대상을 <u>이취 뿐만 아니라 이미도 포함</u>

‘18~’19년 자율점검 보고 분석 결과, 이취 뿐만 아니라, 김빠진 맛, 물맛 등의 이미 지속 발생 → ‘이미’에 대한 자율 관리 필요

✓ <u>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이취(이미) 자율점검 보고를 원스톱으로 처리</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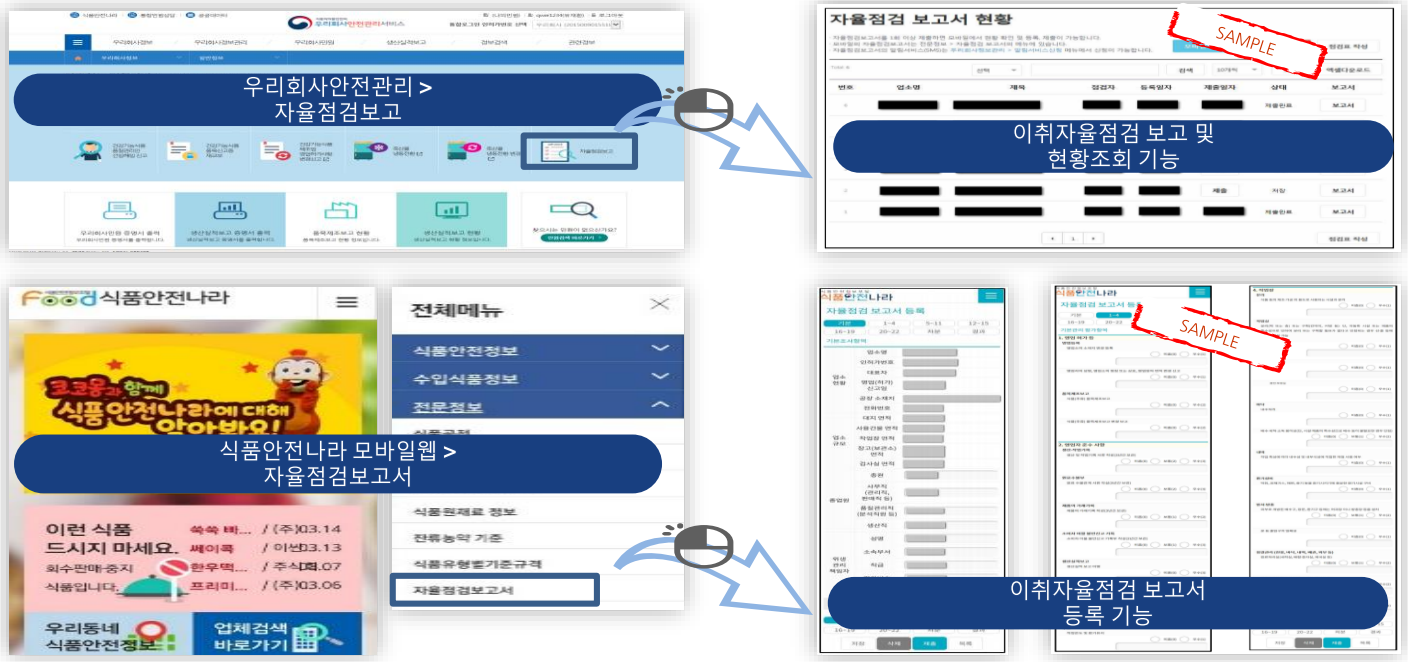

(2) 주류 이취(이미) 자율관리 체계 운영

이취(이미) 자율점검 보고 시스템 (식품안전나라)

✓ **(접속방법)**

식품안전나라 > 우리회사 안전관리 > 로그인 > 우리회사 민원 > 이취(이미) 자율점검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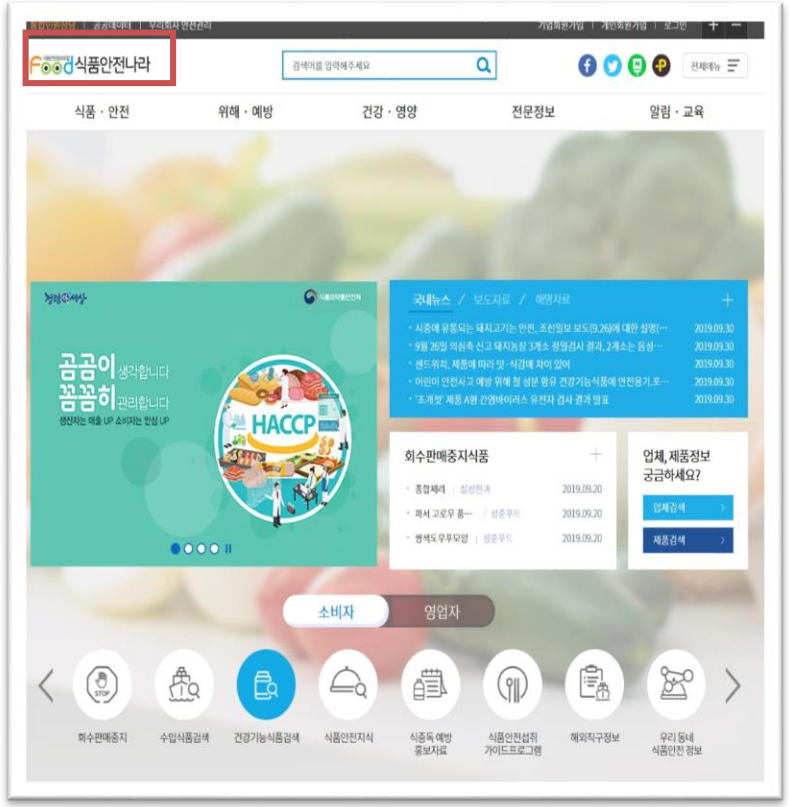

제도 개선 및 소통 강화

✓ 주박(술지게미)의 위생 관리 방안

⇒ 주류와 주박 제조 시 일부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개선

⇒ 탁주·청주박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안전한 주류의 소비·제조를 위한 소통 강화

⇒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밀착형 홍보

⇒ 정책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주박(술지게미) 위생 관리 방안 마련(19년~)

추진 배경

✓ 막걸리협회에서 탁주박(술지게미)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요청('19.3월)

- 다양한 법령 적용에 따른 복잡한 관리체계로 식품원료로 가치가 있는 주박을 사료 또는 폐기물 처리
- 주세법(기재부·국세청), 폐기물관리법(환경부), 식품위생법(식약처)

추진 경과

✓ (환경부) 식품위생법 준수하여 식품 원료로 생산 관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음('19.7.11)

✓ (기재부) 음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주박은 주세법 제3조에 따른 주류에 해당하지 않음('20.1.17)

주박(술지게미) 위생 관리 방안 마련(19년~)

추진 내용

- ✓ 주류와 주박 제조 시 일부 생산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완화(국세청 제도개선 중)
- ✓ 주박 위생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관련 업계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실주 등의 술지게미에 대한 식품원료 추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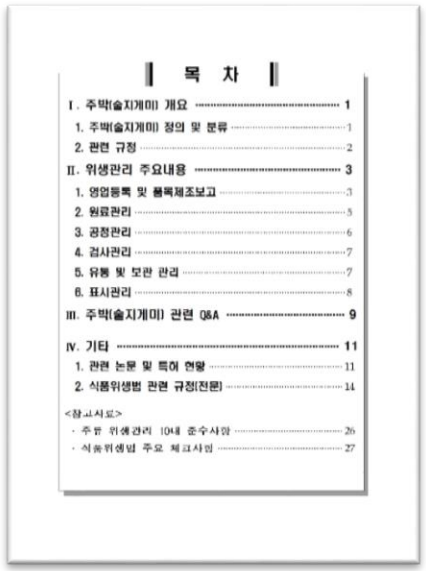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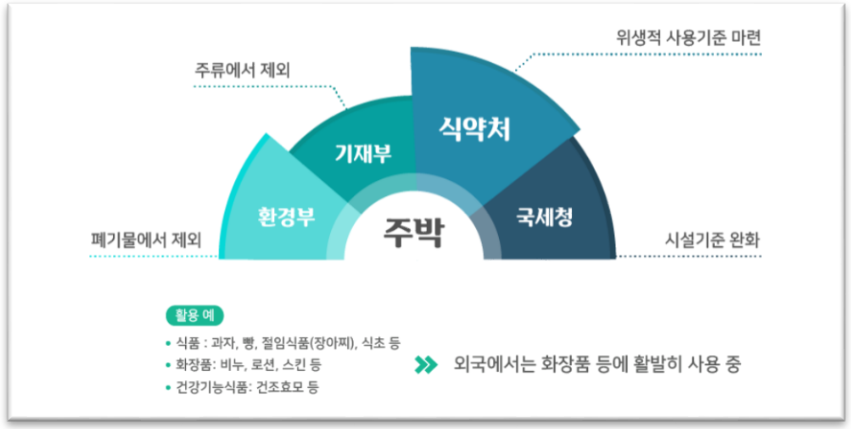

주류의 안전한 생산·소비를 위한 정보 제공

정책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 및 소통 강화

√ 주류안전관리 소식지 발간(분기별1회)

- 관련 법령 주요 제·개정사항, 최근 행정처분·이취 발생 사례 등 분석·제공 등

√ 업계, 협회 등과 간담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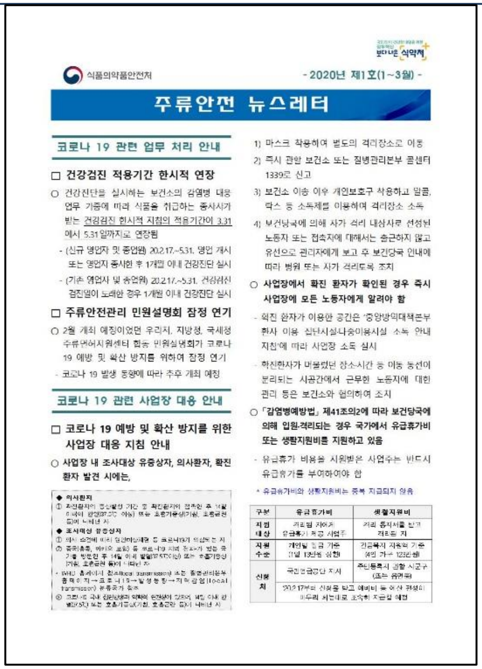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0년 제1호(1~3월) -

주류안전 뉴스레터

코로나 19 관련 업무 처리 안내

□ 건강검진 적용기간 한시적 연장

○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 업무 가중에 따라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가 받는 건강검진 한시적 지침의 적용기간이 3.31에서 5.31일까지로 연장됨

-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20.2.17.~5.31. 영업 개시 또는 영업지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20.2.17.~5.31. 건강검진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주류안전관리 민원설명회 잠정 연기

○ 2월 개최 예정이었던 우리처, 지방청,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합동 민원설명회가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잠정 연기

- 코로나 19 발생 동향에 따라 추후 개최 예정

코로나 19 관련 사업장 대응 안내

□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안내

○ 사업장 내 조사대상 유증상자, 의사환자, 확진환자 발견 시에는,

◆ 의사환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1) 마스크 착용하여 별도의 격리장소로 이동
2) 즉시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
3) 보건소 이송 이후 개인보호구 착용하고 알콜, 락스 등 소독제를 이용하여 격리장소 소독
4)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 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노동자 또는 접촉자에 대해서는 출근하지 않고 유선으로 관리자에게 보고 후 보건당국 안내에 따라 병원 또는 자가 격리토록 조치

○ 사업장에서 확진 환자가 확인된 경우 즉시 사업장에 모든 노동자에게 알려야 함

- 확진 환자가 이용한 공간은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 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지침'에 따라 사업장 소독 실시
- 확진환자가 머물렀던 장소·시간 등 이동 동선이 분리되는 시공간에서 근무한 노동자에 대한 관리 등은 보건소와 협의하여 조치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음

-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음

구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지원 수준	개인별 임금 기준 (1일 13만원 상한)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 (4인 가구 123만원)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20.2.17부터 신청을 받고 예비비 등 예산 편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조속히 지급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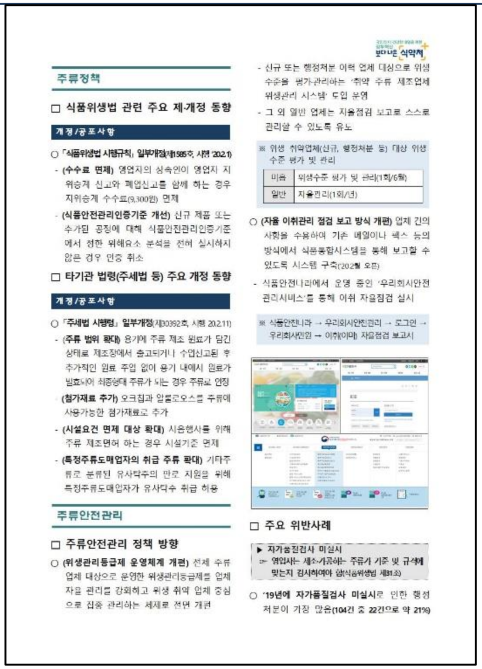

주류정책

□ 식품위생법 관련 주요 제·개정 동향

개정/공포사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제1585호, 시행 '20.2.1)

- (수수료 면제) 영업자의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 지위승계 수수료(9,300원) 면제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개선) 신규 제품 또는 추가된 공정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위해요소 분석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인증 취소

□ 타기관 법령(주세법 등) 주요 개정 동향

개정/공포사항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제30392호, 시행 20.2.11)

- (주류 범위 확대) 용기에 주류 제조 원료가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형태 주류가 되는 경우 주류로 인정
- (첨가재료 추가) 오크칩과 알룰로오스를 주류에 사용가능한 첨가재료로 추가
- (시설요건 면제 대상 확대) 시음행사를 위해 주류 제조면허 하는 경우 시설기준 면제
-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취급 주류 확대) 기타주류로 분류된 유사탁주의 판로 지원을 위해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유사탁주 취급 허용

주류안전관리

□ 주류안전관리 정책 방향

○ (위생관리등급제 운영체계 개편) 전체 주류업체 대상으로 운영한 위생관리등급제를 업체 자율 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취약 업체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는 체제로 전면 개편

- 신규 또는 행정처분 이력 업체 대상으로 위생수준을 평가·관리하는 '취약 주류 제조업체 위생관리 시스템' 도입 운영
- 그 외 일반 업체는 자율점검 보고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

※ 위생 취약업체(신규, 행정처분 등) 대상 위생 수준 평가 및 관리

미흡	위생수준 평가 및 관리(1회/6월)
일반	자율관리(1회/년)

○ (자율 이취관리 점검 보고 방식 개편) 업체 간의 사항을 수용하여 기존 메일이나 팩스 등의 방식에서 식품통합시스템을 통해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20월 오픈)

- 식품안전나라에서 운영 중인 '우리회사안전관리서비스'를 통해 이취 자율점검 실시

※ 식품안전나라 → 우리회사안전관리 → 로그인 → 우리회사민원 → 이취(이미) 자율점검 보고서

□ 주요 위반사례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 영업자는 제조·가공하는 주류가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 검사하여야 함(식품위생법 제31조)

○ '19년에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인한 행정처분이 가장 많음(104건 중 22건으로 약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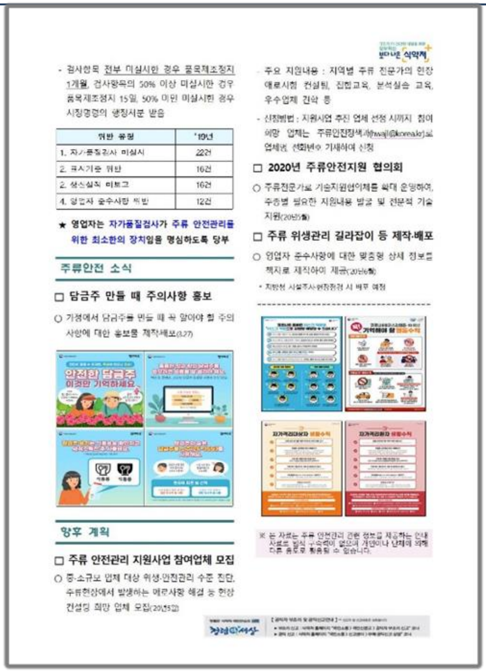

- 검사항목 전부 미실시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1개월, 검사항목의 50% 이상 미실시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 50% 미만 미실시한 경우 시정명령의 행정처분 받음

위반 유형	'19년
1.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2건
2. 표시기준 위반	16건
2. 생산실적 미보고	16건
4.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2건

★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가 주류 안전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을 명심하도록 당부

주류안전 소식

□ 담금주 만들 때 주의사항 홍보

○ 가정에서 담금주를 만들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물 제작·배포(3.27)

향후 계획

□ 주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 중·소규모 업체 대상 위생·안전관리 수준 진단, 주류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 등 현장 컨설팅 희망 업체 모집('20년5월)

- 주요 지원내용 : 지역별 주류 전문가의 현장 애로사항 컨설팅, 집합교육, 분석실습 교육, 우수업체 견학 등
- 신청방법 : 지원사업 추진 업체 선정 시까지 참여 희망 업체는 주류안전정책과(hwaji@korea.kr)로 업체명, 전화번호 기재하여 신청

□ 2020년 주류안전지원 협의회

○ 주류전문가로 기술지원협의체를 확대 운영하여, 주종별 필요한 지원내용 발굴 및 전문적 기술지원('20년5월)

□ 주류 위생관리 길라잡이 등 제작·배포

○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맞춤형 상세 정보를 책자로 제작하여 제공('20년6월)

* 지방청 시설조사·현장점검 시 배부 예정

※ 본 자료는 주류 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 자료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청렴韓세상

Thank You!

[공직자 부조리 및 공익신고안내]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보호됩니다.

▶ 부조리신고 :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공직자 부조리 신고” 코너

▶ 공익신고 :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소통>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 상담” 코너